

산림청 공고 제2015-101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6. 17.

산 립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통합 추진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공통과정을 마련하는 등 유사업무 통폐합과 양성과정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가.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안 제8조)
 - 목재교육분야 프로그램의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목재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
-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 별표1)
 -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수강 등으로

인한 교육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성기관의 교육 운영 효율성을 제고

- 하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 자격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공통과정은 수강을 면제

○ 교육시설 구성 항목의 강의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강의실 규모를 ‘교육인원 1명당 1m²이상, 총 전용면적 100m² 이상’에서 ‘1실 이상으로 실당 기준면적 49.5m² 이상’으로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재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숲해설가 전문과정 또는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중 공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으로 구성한다.
 - 나. 공통과정
 - 1) 공통과정의 교육시간은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하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 자격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공통과정은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36	24	12
산림교육론 (12시간 이상)	산림교육의 이해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체험교육, 산림치유 개론, 관련법령, 제도, 정책 등	3	3	
	나무 · 숲 · 임업	숲의 개념, 산림의 기능, 경영, 이용, 조성, 보호	3	3	
	숲해설개론	숲해설의 역사, 정의, 방법, 종류	3	3	
	산림휴양 · 문화	산림의 문화적 장르별 기능, 인류문명과 산림의 역할, 산림휴양의 개념, 역사, 정의, 산림의 휴양 기능과 활용	3	3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산림생태학	생태계일반, 산림생태계 구성요소, 특성, 숲의 발달, 중간관계, 중요성, 관리 등	3	3	
	식물의 이해	식물일반(명명, 분류, 성장생리, 종류 등), 관찰방법	18	6	12
커뮤니케이션 (3시간 이상)	리더십과 인성교육	리더십과 인성교육	3	3	

다. 분야별과정

1) 숲해설가 과정

가) 숲해설가 과정의 교육시간은 13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34	39	95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야생동물의 이해 (조류, 포유류)	야생조수 생태학	10	4	6
	곤충의 이해	곤충의 생태학	6	2	4
	산림토양학	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	5	2	3
커뮤니케이션 (20시간 이상)	인간관계학	발달심리 인간관계의 유형	5	5	
	커뮤니케이션기법	대상별 의사소통, 스피치 요 령, 실습	6	3	3
	숲해설 기법	숲해설 기법 이해 숲해설 방법의 이해 및 적용 숲해설 매체 활용법	9	3	6
교육프로그램 개발 (27시간 이상)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이해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9	3	6
	교육프로그램 운 영 실습	산림교육교재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18	6	1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시간 이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응급처치 대처 및 실습	12	4	8
	야외활동 지도	야외활동 특성의 이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3	1	2
선택과정 (21시간 이상)	양성기관별 특화된 교육내용으로 구성 (예, 목재교육,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등), 파충류, 양서류, 수서생태계, 생태공예, 자연놀 이 프로그램 등)		21	6	15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 교사 등으로 활동		30		30

나 숲해설가 과정은 초본식물(草本植物)·목본식물(木本植物), 곤충, 야생
동물 등 산림 및 생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숲해설을 하거나 주제해설 프로그
램을 개발·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

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교육과정에서는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습 시간에는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5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2) 유아숲지도사 과정

가) 유아숲지도사 과정의 교육시간은 16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합계	강의	실습
			169	75	94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야생동물의 이해	야생조수생태학 및 도감활용법	10	4	6
	곤충의 이해	국내 주요 서식곤충의 이해 및 도감활용법	6	2	4
	산림토양학	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	5	2	3
커뮤니케이션 (13시간 이상)	커뮤니케이션기법	대상별 의사소통, 스피치 요령, 실습	6	3	3
	멀티미디어활용법	유아숲활동 기록법 동영상 제작 및 활용법	7	3	4
유아교육 (22시간 이상)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해, 유아교육의 역사 및 세계적 동향	6	6	
	유아발달론	태아·영아 발달이론, 유아발달이론	8	8	
	숲유치원과 특수아동지도	특수교육의 이해·지도 숲에서의 재활, 치유 등 사례	8	6	2
유아숲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63시간 이상)	유아숲생태교육개론	유아숲 교육의 이해 유아숲체험원의 이해와 필요성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의 이해	10	6	4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5	2	3
	숲유치원 운영 사례	선진국 사례 연령별, 장소별 사례	3	3	
	숲교실 만들기	숲교실의 규율 숲교실의 주의사항	3	3	
	유아숲생활지도	유아 기본생활습관의 이해 숲에서의 유아 생활 이해·지도	6	4	2
	유아숲지도사론	유아숲지도사의 소양 및 자질 유아숲지도사의 역할 및 업무	6	4	2

	유아숲 생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10	4	6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그림책, 생태과학, 생태미술, 동식물교감, 명상, 자연건강 등) 유아숲놀이지도(자연물을 활용한 유아숲놀이 이해, 연령별·계절별·장소별 숲놀이 지도)	20	5	15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20시간 이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응급 처치 대처 및 실습	12	4	8
	야외활동 지도	야외활동 특성, 교육시설 및 위험 요소 모니터링	4	2	2
	아동안전관리	유아 자연생활 건강의 이해 유아 건강생활과 안전교육	4	4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30		30

나) 유아숲지도사 과정은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유아숲생태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숲길체험지도사 과정

가) 숲길체험지도사 과정의 교육시간은 1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09	32	77
등산·트레킹 일반 (50시간 이상)	등산·트레킹 역사	등산·트레킹 역사	2	2	
	등산·트레킹 이론	짐 꾸리기, 보행, 야영생활 등산 및 트레킹 장비의 이해 산악환경 및 기상 등산·트레킹 체조 숲길이용 철학, 겨울산행	10	3	7
	등산·트레킹 문화	친환경등산, 환경윤리, 등산예절	4	4	
	암벽기초	매듭법, 확보법, 하강법 장비사용법, 기초암벽 실습	14	4	10

	독도법	지도의 이해 나침반, GPS의 이해 및 활용	10	4	6
	숲길체험 안내 실무	등산·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체험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7	3	4
구조·구급 (20시간 이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응급처치 대처 및 실습	12	4	8
	구조	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	8	2	6
커뮤니케이션 (6시간 이상)	커뮤니케이션기법	대상별 의사소통, 스피치 요 령, 실습	6	3	3
산림환경 (6시간 이상)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이해	6	3	3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30		30

나) 숲길체험지도사 과정은 숲길 등에서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도·교육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교육시설의 구성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 1실 이상으로 실 당 기준면적 49.5㎡ 이상
- 2) 실습장 : 산림교육 전문과정 실습 및 현장학습에 적합한 시설 또는 장소
- 3) 사무실 : 사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
- 4) 교재·교구 : 산림교육 전문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을 구비
- 5)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다. 교육시설에는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문인력의 구성

가.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의 평가 등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하되, 교과목당 이론 및 실습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나.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참가자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관리 등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gr@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3호,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3) 팩 스 : 042-481-8887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전화 042-481-1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